

---

# 음주 교육반 상담 프로그램 컨설팅 계획(안)

---

2020. 10.



# 음주 교육반 상담 프로그램 컨설팅 계획(안)

## I 개 요

- 사 업 명 : 음주 교육반 상담 프로그램 컨설팅
- 추진목적 : 음주 교육반 강화대비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필요
- 추진기간 : 계약일 ~ '20. 12. 20.
  - ※ 컨설팅 보고서는 20일까지 납기, '21년 교육도입 전까지 수시 자문 실시

## II 추진내용

- 음주운전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
  - 음주운전교육반 특징을 고려, 8회기(회기별 4H, 총32H) 음주운전자 개입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학회 전문성 기초로 개발
  - 특정 척도보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음주교육반 내방 교육생 특성 고려, 제한된 회기(8회기 : 초기, 중기, 종결)에 적합한 내용 반영
    - ※ 예시 : 알코올사용장애 척도만 고려하여 8회기 전체를 해당 척도로 다루는 것은 지양
  - 사회생활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성인 대상의 음주운전습관 개선
- 각 회기별 사용된 상담기법 및 상담도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시

## 내담자 특성

-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 
(5년 초과 과거 적발횟수를 고려하면 4~5회 적발 다수 : 구속경험 가진 내담자 30~50% 참가)
-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비자발적 특징
- 20대 초반 ~ 60대 중후반까지 나이 스펙트럼이 넓음.
- 남성이 절대 다수(일부 여성 교육생)
- 알코올 사용장애, 반사회성, 스트레스, 경계선성격장애, 충동성, 공격성, 불안, 우울, 통찰력 부족, 낮은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력, 잘못된 습관과 왜곡된 인지 등 정서·인지·행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생마다 각자 다른 유형과 수준의 문제를 보임
- 구속경험으로 인해 단주를 한 교육생, 양가감정을 가진 교육생, 왜곡된 인지로 저항하는 교육생 등 집단참가자 태도가 각기 다름
-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
- 정상범주의 교육생과 임상적 특성의 교육생이 혼재되어 있음
- 임상적 특성을 가진 교육생 : 문제음주성향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성, 낮은 자기통제력,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며, 반사회적 성향이 강한 교육생도 일부 있음.
- 교육생의 태도는 겉으로는 순응적이나 이는 면허취득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음.

## 현재 운영 중인 음주상담 교육특징

- 구조화된 집단 심리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
- 주 1회(4H) × 4회기 = 16H(현재) → 개정 후, 주 1회(4H) × 8회 = 32H 로 시간 확대 예정
- 매월 교육대상자가 달라지며, 해당 월 입교 대상자는 최대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음
- 세부 프로그램
  - 1) 1회기 : 초기상담, 동기강화
  - 2) 2회기 : 태도변화, 음주거절훈련
  - 3) 3회기 : 스트레스관리 및 분노관리
  - 4) 4회기 : 종결상담 순으로 상담회기 구성

### Ⅲ 일반사항

- 본 과업내용서는 『음주교육반 상담프로그램 컨설팅』 과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정부규정,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상위계획,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지시서 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,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.
- 준공금은 공사규정 및 과업내용서,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물 확인 및 검사 후 지급한다.
- 본 과업수행에 활용할 각종 통계 등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은 연구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, 연구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중 참여 연구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수급기관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중요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관련자료 작성(도서 포함), 관계

기관 협의, 회의참석, 자료보완,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자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.

- 보다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, 본 과업수행을 위해 적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시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## IV 보안사항

-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.
-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고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-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,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로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-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-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- 기타 과업수행의 보안사항 이행은 도로교통공단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.

## V 과업 성과품

-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,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.
- 과업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·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.
  1.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획서
  2. 최종보고서
    - 본보고서 : 5부
    -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식
-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등을 최종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.